

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(제30조제2항 관련)

구분	내용		기준
장비	1. 적외선 온도계		1대 이상
	2. 데이터 기록계		1대 이상
	3. 온도 · 습도계		1대 이상
자산	법인	자본금	2억원 이상
	개인	자산평가액	
기술 인력	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, 기계, 재료, 화공, 전기 · 전자, 정보통신,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		3명 이상

비고

1.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,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(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)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.
2.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, 자산평가액은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.
3.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, 기능장,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.
4.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.